

(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-참조8)

#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(이군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8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6월 일

발 의 자: 이군수, 최현백, 조정식, 성해련,  
김선임, 최종성, 박기범, 정연화,  
고병용, 강상태, 이준배, 서은경,  
김윤환, 윤혜선, 서희경, 추선미,  
안극수, 이영경 (이상 18명)

## □ 제 정 이 유

-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,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함

## □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마.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바.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사. 홍보 및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 및 제9조)

## □ 제 정 조 례 안 : 붙임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제3항, 제22조제1항 및 제6항
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6조제4항, 제49조

## 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성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정대리인과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다.
3. “지능정보화”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다.
4. “정보격차”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성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·복지·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실행계획)**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
4.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실태조사)**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추진사업)** 시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
2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3.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7조(위탁 및 지원)**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·복지·정책 소식 발송 업무
2.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
3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홍보)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「성남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

# 【장애인복지법】

###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·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 【지능정보화 기본법】

## 제46조(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

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제49조(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) ① 국가기관과

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·생산하는 사업자
2. 장애인·고령자·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
3.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

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3. 그 밖에 경제적, 지역적,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